

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



- ✓ 정년을 1년이상 운영 중인 중소·중견기업이
- ✓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
- ✓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

1인당 최대 **720만원** 지원
(분기 90만원 X 2년간)



계속고용제도 시행일 관련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어요

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
계속고용제도*를 명시하면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
시행일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

(기존에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날을 시행일로 봄, 시행일 소급 불인정)

* **계속고용제도란?**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①연장 또는 ②폐지, ③정년 후 3개월 이내에
재고용 방법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



A근로자를 정년퇴직('20.10.1.) 후 계속고용한 기업이 '21.3.1. 취업규칙에
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서 그 시행일을 A근로자 정년퇴직일 이전인
'20.9.1.로 소급하여 명시하는 경우 A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인정

※ 다만, '20.1.1.~'21.12.31.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
한시적 지원('19.12.31.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불가)

장려금 신청



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

지원대상 기업

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소·중견기업

- 우선지원 대상기업 : 제조업 500인↓, 건설·운수·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↓, 숙박 및 음식점업, 도·소매업·금융업·보험업 등 200↓, 기타 100↓

•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mme.or.kr)에서 확인

지원 제외

- 국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
-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증인 사업주
- 부동산업, 일반유통업, 배팅업 등
- 100인 이상인 기업 중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% 초과



지원 요건

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

- 취업규칙, 단체협약 상에 정년규정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1년이상 계속하여 단절없이 운영

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명시

- 현행 정년을 1년 이상 연장(정년연장)
- 현행 정년을 폐지(정년폐지)
-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재고용(재고용)

Q & A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?

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
Q & A 기존 취업규칙에 “회사사정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”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?

재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(예) 회사가 필요시 재고용 할 수 있다(X) →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재고용 한다(O)

다만,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계속 고용이 불가한 경우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 객관적·합리적인 사유*를 명시**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* (예)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, 해당 직무가 폐지된 경우,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을 상실한 경우 등

** (취업규칙 작성 예시)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. 다만,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속 고용할 근로자를 정할 수 있다.



지원 대상 근로자

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(단, 피보험기간 1년 이상자)



지원 수준 및 신청 시기

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(월 30만원) 피보험자의 20% 한도를 2년간 지원

계속고용 시행 이후 첫 정년도래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,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



신청방법

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를 통해 신청 가능

구비 서류

- ①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
- ②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
- ③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 등)

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(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)

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
(사내 인트라넷, 메일 공지 및 정년퇴직을 사유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력 등)

